



제32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
제 3 차 기 획 행 정 위 원 회

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12.

기획행정위원회

전 문 위 원 왕 은 선

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6년 8월 3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

□ 예산안 규모

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·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 반영과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 출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(안)임

(단위:천원)

구 분		2026년도 제2회 추경	2026년도 제1회 추경	증 감	증감률(%)
총 계		2,864,302,555	2,585,667,539	278,635,016	10.78%
일반회계		2,479,477,809	2,263,196,032	216,281,777	9.56%
특별회계		384,824,746	322,471,507	62,353,239	19.34%
	공기업특별회계	240,998,952	206,852,247	34,146,705	16.51%
	기타특별회계	143,825,794	115,619,260	28,206,534	24.40%

예산안의 총 규모는

기정예산 2조 5,856억 6,753만 9천 원에 비하여

2,786억 3,501만 6천 원이 증가된 2조 8,643억 255만 5천 원임.

□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

2026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전체

(단위:천원)

장 · 관 · 항	예 산 액		기 정 액		비 교 증 감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 계	2,479,477,809	100.00%	2,263,196,032	100.00%	216,281,777	9.56%
100 지방세수입	532,200,000	21.46%	470,700,000	20.80%	61,500,000	13.07%
200 세외수입	162,843,290	6.57%	147,109,919	6.50%	15,733,371	10.69%
300 지방교부세 등	293,419,000	11.83%	298,200,000	13.18%	△4,781,000	△1.60%
400 조정교부금등	190,414,000	7.68%	195,369,000	8.63%	△4,955,000	△2.54%
500 보조금	1,113,247,631	44.90%	1,027,632,030	45.41%	85,615,601	8.33%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87,353,888	7.56%	124,185,083	5.49%	63,168,805	50.87%

세입 예산안은

총 2,162억 8,177만 7천 원이 증가되었으며,
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615억 원,
 세외수입 157억 3,337만 1천 원, 국도비보조금 856억 1,560만 1천 원
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1억 6,8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,
 지방교부세 47억 8,100만 원, 조정교부금 49억 5,500만 원이 감액됨.

□ 기획행정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

(단위:천원)

부 서	예 산 액	기 정 액	비 교 증 감	
				증감률
	431,862,205	426,716,531	5,145,674	1.21%
시민시장담당관	1,464,778	1,471,858	△7,080	△0.48%
시민안전관	9,908,376	8,988,098	920,278	10.24%
청년담당관	9,792,306	9,066,795	725,511	8.00%
홍보담당관	6,082,638	5,983,497	99,141	1.66%
감사관	169,332	169,332	0	0.00%
기획조정실	255,923,456	254,882,666	1,040,790	0.41%
행정국	47,949,117	49,502,820	△1,553,703	△3.14%
재정경제국	48,946,290	45,359,682	3,586,608	7.91%
도서관사업소	16,594,063	16,804,516	△210,453	△1.25%
읍면동	35,031,849	34,487,267	544,582	1.58%

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
기정예산액 4,267억 1,653만 1천 원에서 1.21% 증가한
4,318억 6,220만 5천 원으로
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.42%에 해당함.

실·국·소별 주요사업 (기정예산 절감분과 국도비 반환금 등을 제외)

▪ **시민시장담당관**

기정예산액 14억 7,185만 8천 원 보다 0.48% 감소한 14억 6,477만 8천 원이며, 직통 문자민원 서비스 운영 8,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▪ **시민안전관**

기정예산액 89억 8,809만 8천 원 보다 10.24% 증가한 99억 837만 6천원이며, 하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▪ **홍보담당관**

기정예산액 59억 8,349만 7천 원 보다 1.66% 증가한 60억 8,263만 8천 원이며, 방송·영상 장비 유지관리 9,314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▪ **기획조정실**

기정예산액 2,548억 8,266만 6천 원 보다 0.41% 증가한 2,559억 2,345만 6천 원이며, 교차로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, AI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운영 9억 5,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▪ 행정국

기정예산액 495억 282만 원 보다 3.14% 감소한 479억 4,911만 7천 원이며, 사회복지제도 지원 6억 7,384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 하고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.

▪ 재정경제국

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53억 5,968만 2천 원 보다 7.91% 증가한 489억 4,629만 원이며,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억 6,900만 원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.

- 행정복지센터 및 읍·면·동 소관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 편성내용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.

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(공유재산관리)

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7억 5,183만 9천 원에서 116.98% 증가한 450억 2,757만 3천 원으로
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31.31%에 해당함.

□ 검토의견

-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이후 국·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이나 기타 여건의 변화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른 편성 취지와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·도비보조금과 자체재원의 증감분을 반영하고, 집행잔액의 반납 및 세출구조 조정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, 사업별 증감 사유와 자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.
- 특히, 기정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비가 중복 또는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, 신규·증액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,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사업은 예산 의결에 앞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는 만큼, 사업 추진 경위와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.
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예산 심의·의결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향후 사업 추진 일정과 예산 편성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안전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사례가 있어, 안전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거와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 향후에는 필요한 사전 절차를 완료한 후 소요 예산을 편성·제출하도록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, 재정운용의 절차적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